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2. 4.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1월 18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1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1월 28일)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가. 제 안 이 유

- 영등포구를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부터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장(1인) : 구청장
 - 부위원장(2인) : 부구청장, 민간 부위원장(위원중에서 호선)
 - 위 원 : 관계공무원, 건축, 시설물, 디자인, 조명 및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임 기 : 2년

- 회의개최

- 상정 안건 수에 따라 분야별로 수시 개최
- 분야별 안건 심의자문위원 선정 회의

- 심의내용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조명 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중에서 호선되는 민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공무원과 건축, 시설물, 디자인, 조명 및 조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상정 안건수에 따라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 조명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0
----------	-----

제출년월일 : 2008.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영등포구를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의 통합기능을 통하여 일관된 디자인정책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운영목적 :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및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
 - 임기 : 2년
- 상정 안건 수에 따라 분야별로 수시 개최

○ 심의내용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디자인위원회조례 제정계획

〈 구청장방침-392(2008.01.10)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제정 조례 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08. 1. 10 ~ 1. 15)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구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조화로운 도시경관 구축을 위한 민간지원 및 영등포 디자인상 수여에 관한 사항
5.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 부위원장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구 공무원
3.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이 두개 이상의 소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소위원회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자문 결과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1. 사전자문 : 건축물 외관디자인

분 류	대 상 건 축 물	비 고
공공 건축물	가. 구에서 건축하는 공공청사 나.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 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문화관광 시 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동상·기념비 등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의 심의대상시설물은 제외한다)	
가로녹지 시 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환경관리 시 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 시 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미관지구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한한다)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관리대상 광고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광고시설	「서울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26조 (위원회심의사항)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